

# 보건식품 비안(备案) 업무지침(시행)

‘보건식품 비안’이란 보건식품 제조업체가 법적인 절차·조건과 요구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보건기능과 품질의 관리가능성을 나타내는 자료를 보관·공개·조사 대비의 목적으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 1. 적용범위

본 지침은 “보건식품 등록과 비안(备案) 관리방법”에 규정한 보건식품 비안(备案)업무에 적용한다.

## 2. 비안(备案)의 주체

### 2.1 국산 보건식품

국산 보건식품의 비안(备案)인은 보건식품 제조업체이다. 보건식품을 기 등록(注册)한 원 등록인(아래 원 등록인이라 약칭함)은 비안인(备案人)인이 될 수 있다.

### 2.2 수입 보건식품

수입 보건식품의 비안인(备案人)은 시중에 판매하는 보건식품의 해외 제조업체이다. 해외 제조업체(비안인(备案人))란 그 소재국(지역)의 시장진입 요구에 부합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한다. 제품 제조국(지역)이란 수입 보건식품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나라(지역)를 말한다.

## 3. 비안(备案)의 절차·요구

### 3.1 비안(备案) 시스템 등록 아이디 취득

#### 3.1.1 국산 보건식품

국산 보건식품의 비안(备案)인은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비안(备案)관리 정보시스템 등록 아이디 취득 신청을 제기한다. 등록 아이디 신청의 구체적인 방식은 각 성·자치구·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별도로 반포한다.

### 3.1.2 수입 보건식품

수입 보건식품의 비안인(备案人)은 제품 제조국(지역) 정부 주관부서 또는 법률서비스기구에서 발부하여 비안인(备案人)인이 시중 보건식품 해외 제조업체임을 증명하는 자격 증명서류와 담당자 위임장 등을 소지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행정접수 서비스부서 현장에서 비안(备案) 관리 시스템 등록 아이디 취득 신청을 제기하고, 접수부서는 심사를 거친 후 비안인(备案人)에게 등록 아이디를 발부한다.

### 3.1.3 원 등록인(注册人)의 보건식품 비안(备案)

원 등록인(注册人)이 제품을 비안(备案)으로 변경할 경우, 총국 기술 심사·평가기구에 신청해야 한다. 총국 기술 심사·평가기구는 비안(备案) 변경신청 관련 정보를 심사하고, 요구에 부합할 경우에 제품 관련 전자등록정보를 비안(备案) 관리부서에 전달하고 동시에 신청인에게 비안(备案) 관리부서에 비안(备案)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고지한다.

원 등록인(注册人)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보건식품 원료 목록” 공표 전에 접수한 보건식품 등록신청으로, 그 원료는 “보건식품 원료 목록”에 수록 및 비안(备案) 관련 기술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의 비안(备案)을 신청한 원 등록신청인; (2) 기 등록된 보건식품으로, 그 원료는 “보건식품 원료 목록”

에 수록 및 비안(备案) 관련 기술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의 비안(备案)을 신청한 원 보건식품 등록인.

“보건식품 원료 목록” 반포 전에 접수한 보건식품 등록신청 및 등록된 보건식품의 부분 원료 또는 사용량이 “보건식품 원료 목록” 및 비안(备案) 기술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등록신청인 또는 증서 소유자가 “보건식품 원료 목록”에 따라 제품 원료와 제품 기술요구의 조정에 동의할 경우에는 원 등록인이 될 수 있다.

“보건식품 원료 목록” 반포 후 접수한 보건식품 등록신청의 원료가 “보건식품 원료 목록”에 수록 및 제품이 관련 기술요구에 부합하는 원 등록신청인은 원 등록인으로 동 제품의 비안(备案)을 신청할 수 없다.

### 3.2 제품 비안(备案) 정보의 기재·제출

#### 3.2.1 국산 보건식품

비안인(备案人)은 비안(备案) 관리 정보 시스템의 등록 아이디를 취득한 후 <http://bjba.zybh.gov.cn> 주소에서 시스템에 접속하여 침착히 읽어보고, 관련 요구에 따라 비안(备案)인 및 비안(备案) 신청 제품 관련 정보를 일일이 기재하며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된 바코드와 확인코드가 달린 비안(备案)신청표·제품 성분·라벨설명서·제품 기술요구 등을 항목별 출력한 후 기타 비안(备案) 자료 모두를 매 페이지 내용에 비안(备案)인의 도장을 날인(검측기구에서 발부한 검측보고서·공증서류·증명자료 제외)한다.

비안(备案)인은 모든 비안(备案) 자료를 전자파일(PDF 파

일)로 칼라 스캔한 후 보건식품 비안(备案)관리 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하며, 확인 후 제출한다.

원 등록인(注册人)은 기 등록(또는 등록출원)한 제품을 비안(备案)으로 변경할 경우, 보건식품 비안(备案)관리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보건식품 원료 목록” 및 관련 비안(备案) 관리요구에 따라 원 등록제품의 관련 정보를 수정·완전화하고 수정한 내용과 이유를 기재한다.

### 3.2.2 수입 보건식품

비안(备案)인은 비안(备案) 관리 정보 시스템의 등록 아이디를 취득한 후 <http://bjba.zybh.gov.cn> 주소에서 시스템에 접속하여 침착히 읽어보고, 관련 요구에 따라 비안(备案)인 및 비안(备案) 신청 제품 관련 정보를 일일이 기재하며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된 바코드와 확인코드가 달린 비안(备案)신청표·제품 성분·라벨설명서·제품 기술요구 등을 항목별 출력한 후 기타 비안(备案) 자료(구체적으로 6. 수입 보건식품의 비안(备案) 자료 항목 및 요구 참조) 모두를 매 페이지 내용에 비안(备案)인의 도장을 날인(검측기구에서 발부한 검측보고서·공증서류·증명자료 제외)한다. 비안(备案)인이 도장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대표인의 서명 또는 인감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비안(备案)인은 모든 비안(备案) 자료를 전자파일(PDF 파일)로 칼라 스캔한 후 보건식품 비안(备案)관리 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하고, 확인 후 제출하며 동시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행정접수 서비스부서에 비안(备案) 자료 원본 1부

를 전부 제출한다.

### 3.3 비안(备案)번호의 발부·보관과 공개

비안(备案)자료가 요구에 부합할 경우에 비안(备案) 관리 부서는 즉시 비안(备案)하고, 비안(备案)번호를 발부함과 동시에 관련 양식에 따라 비안(备案) 증빙을 작성한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비안(备案)인에게 관련 자료의 보정을 일괄 고지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보건식품 등록과 비안(备案) 관리방법”, “보건식품 원료 목록”의 요구에 따라 보건식품의 비안(备案)과 감독관리업무를 진행한다. 비안(备案)인은 조사 대비 완전한 비안(备案)자료를 보유해야 한다.

비안(备案) 관리부서는 원 등록제품에 비안(备案)번호를 발부한 후 총국 기술 심사·평가기구에 원 등록증서와 비준 번호의 말소 또는 원 등록신청의 종료를 서면으로 고지한다.

## 4 비안(备案)자료의 형식 요구

4.1 보건식품 비안(备案) 자료는 “보건식품 등록과 비안(备案) 관리방법”, “보건식품 원료 목록” 및 부재료·검측과 평가 등 규장·규범성문건·강제성표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2 보건식품 비안(备案) 자료는 엄격히 비안(备案)관리 정보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4.3 비안(备案) 자료의 첫페이지는 신청자료 항목 목차와 페이지번호이다. 모든 자료의 페이지 사이에 구분페이지

를 두고, 구분페이지에는 자료명칭 및 해당 자료의 목차 번호와 페이지번호를 기재한다.

4.4 비안(备案) 자료의 관련 내용(예를 들면 제품 명칭·비안(备案)인의 명칭·주소 등)은 일치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명·이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4.5 비안(备案) 자료는 A4 규격의 용지로 출력하고, 중문은 “SIMSUN(宋体)” 4 호 이상, 영문은 12 호 이상의 글자체를 사용하고 내용은 완전하고 명확해야 한다.

## 5 국산 보건식품의 비안(备案) 자료 항목 및 요구

5.1 보건식품 비안(备案) 등기표, 제출 자료의 진실성을 책임지는 비안(备案)인의 법률책임승낙서

비안(备案)인은 보건식품 비안(备案)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안(备案)인 정보·제품 정보를 완성화하면 비안(备案) 등기표와 법률책임승낙서는 자동 생성한다. 비안(备案)인은 3.2 항의 요구에 따라 출력·날인 후 업로드한다.

### 5.2 비안(备案)인의 주체등기 증명자료

영업집조·통일사회신용대마/조직기구대마 등 법률규정에 부합하는 법인조직 증명자료의 스캔본 및 보건식품의 분류가 표기된 생산허가 증명자료 스캔본을 제공해야 한다.

원 등록인은 보건식품 등록증명자료의 스캔본을 제공해야 한다. 원 등록인이 보건식품 분류가 표기된 생산허가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제공을 면제한다.

### 5.3 제품 성분 자료

5.3.1 제품 성분표는 비안(备案)인이 기재한 정보에 따

라 자동 생성하고, 원료와 부재료의 명칭과 사용량을 포함한다.

원료는 “보건식품 원료 목록”의 규정에 부합하고, 부재료는 보건식품 비안(备案)제품이 사용 가능한 부재료의 관련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원료·부재료의 사용량은 1000 개 최소 제제단위 제조 시의 사용량을 말한다.

5.3.2 선처리를 거친 원료·부재료를 사용할 경우, 선처리한 원료·부재료의 사용 원료는 “보건식품 원료 목록”의 규정에 부합하고, 부재료는 보건식품 비안(备案)제품이 사용 가능한 부재료의 관련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비안(备案) 정보 기재 시 선처리한 원료·부재료가 사용한 원료·부재료의 명칭과 사용량을 각기 나열하고 해당 선처리 원료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선처리한 원료·부재료가 사용한 원료와 부재료가 비안(备案) 제품의 기타 원료·부재료와 동일한 경우, 해당 원료·부재료는 중복 나열할 필요 없고, 사용량은 누계 사용량을 표시하고 사용 가능한 부재료의 범위 및 최대 사용량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5.3.3 원 등록인이 제품 비안(备案)을 신청할 시 원료·부재료가 “보건식품 원료 목록” 또는 관련 기술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비안(备案)인은 요구에 부합하도록 제품의 성분과 관련 기술요구를 조정 및 설명하고, 원료 종류를 추가할 수 없다.

#### 5.4 제품의 제조공정 자료

5.4.1 제조공정도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도는 그림과 부호의 형식으로 원료와 부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최종 제품으로 완성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요 과정·관건적 단계 등을 포함한다. 공정도·공정설명은 제품 기술요구 상 제조 공정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선처리한 원료·부재료를 사용한 경우, 공정도 및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5.4.2 추출·합성 등 공정을 통해 “보건식품 원료 목록” 중 원료의 화학구조와 성분 등을 개변하여서는 아니된다.

5.4.3 합리한 제형을 선택한다. 비안(备案) 제품의 제형은 제품의 사용자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확정하고, 불합리한 제형으로 인한 식용 안전의 피해를 줄인다.

## 5.5 안전성과 보건기능 평가 자료

5.5.1 중간 실험 및 그 이상 규모의 공정 제조를 거친 3차 제품에 대한 기능 성분 또는 주요 성분·위생학·안정성 검측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비안(备案)인은 검측용 샘플 출처의 명확성과 근원확인 가능성을 보장한다. 국산 비안(备案) 제품은 중간 실험 및 그 이상 제조규모 공정 제조를 거친 샘플이어야 한다.

자체 검사 능력을 갖춘 비안(备案)인은 제품에 대한 자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자체 검사 능력을 갖추지 않은 비안(备案)인은 합법적인 자질이 있는 검측기구에 검측을 의뢰해야 한다.

5.5.2 제품 원료·부재료를 합리적으로 사용한 설명 및

제품 라벨설명서·제품 기술요구의 작성이 관련 법규에 부합한다는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5.5.3 원 등록인이 제품 성분 또는 제품 기술요구를 조정하고 비안(备案)을 신청한 경우, 5.5.1 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품 성분과 제품 기술요구를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신고 시 제출한 검측보고서를 제출하고 설명한다.

5.6 제품에 직접 닿는 포장재료의 종류·명칭 및 표준  
제품에 직접 닿는 포장재료의 종류·명칭·표준번호 등 사용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 5.7 제품 라벨·설명서 견본

제품 라벨은 관련 법률·법규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설명서에 해당하는 내용은 설명서의 관련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제품 설명서 견본은 비안(备案)인이 정보 기재 후 자동 생성하고 아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품 명칭】“보건식품 등록과 비안(备案) 관리방법” 등 관련 법률·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1) 제품 명칭은 상표명·통용명과 속성명으로 구성한다. 비안(备案)인은 상표명·원료명 및 제품 제형을 입력하고, 비안(备案) 시스템에 자동 생성한 제품 명칭에서 선택한다.

(2)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등록증명 또는 등록상표 사용위임장을 제공해야 한다.

(3) 동일한 업체는 동일한 성분으로 다른 명칭의 보건

식품을 비안(备案)할 수 없다. 동일한 명칭으로 다른 성분의 보건식품을 비안(备案)할 수 없다.

동일한 성분이란 제품의 원료·부재료의 종류 및 사용량이 모두 일치한 것을 말한다.

동일한 명칭이란 제품의 상표명·통용명·속성명(특정대상·맛 등 포함)이 모두 일치한 것을 말한다.

【원료】 5.3 제품 성분 자료에 의거 모든 원료를 나열한다.

【부재료】 5.3 제품 성분 자료에 의거 모든 부재료를 나열한다.

【기능 성분 또는 주요 성분 및 함량】기능 성분 또는 주요 성분의 명칭 및 함량을 포함한다. 기능 성분 또는 주요 성분의 명칭은 제품 기술요구 중 상응한 지표의 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영양소 보충제 외 제품의 기능 성분 또는 주요 성분의 함량(표기 수치)은 제품 기술요구 중 지표의 최저치와 일치하고 “보건식품 원료 목록”에 규정한 섭취대상에 해당하는 매일 섭취량에 부합해야 한다.

영양소 보충제 제품은 기능 성분의 명칭 및 함량(표기 수치)을 표기하고, 기능 성분의 명칭은 모든 원료가 대응한 영양소로 나열순서는 “보건식품 원료 목록” 중 영양소의 나열순서와 일치해야 한다. 기능 성분의 표기 수치는 성분·생산공정 등 제품 기술요구에 따라 종합적으로 정해진 최소 섭취단위 중 한개 영양소 함량의 확정치이다. 표기 수치는

제품 기술요구 상의 기능 성분 지표범위 및 “보건식품 원료 목록”에 규정한 섭취대상에 해당하는 매일 섭취량에 부합해야 한다. 표기방식은 “1 정 함량”, “1 캡슐 함량”, “1 포 함량”, “1 병 함량” 등이다.

【섭취대상】 “보건식품 원료 목록”의 규정 및 비안(备案) 관리 정보시스템의 기재 요구에 부합하고, 식용안전·명확한 건강기능의 수요가 있고 해당 비안(备案) 제품에 적합한 특정대상이다.

영양소 보충제의 섭취대상은 “보건식품 원료 목록”의 대상 분류에 부합하고, “XX, XX(영양소)보충이 필요한+연령대+대상” 또는 “XX, XX(영양소)보충이 필요한 성인·임부·수유모”로 표기하고, 또한 아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섭취대상이 2 개 또는 2 개 이상 이어진 연령대에 해당한 경우에는 연령대를 합쳐 표기한다. 예를 들면 섭취대상이 7—10 세(7 세와 10 세 포함, 아래 동일함), 11—13 세인 경우는 7—13 세로 표기한다.

(2) 3 종 및 그 이상의 비타민을 함유한 제품은 “종합비타민의 보충이 필요한 XX 대상”으로 표기한다. 3 종 및 그 이상의 광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종합광물질의 보충이 필요한 XX 대상”으로 표기한다. 비타민과 광물질의 종류가 모두 3 개(3 개 포함)이상인 경우에는 “종합비타민·광물질의 보충이 필요한 XX 대상”으로 표기한다.

(3) 3 종 및 그 이상의 비타민 B 군(비타민 B<sub>1</sub>·비타민 B<sub>2</sub>·비타민 B<sub>6</sub>·비타민 B<sub>12</sub>·비타민 B<sub>3</sub>·비타민 B<sub>5</sub>·비타민 B<sub>9</sub> 등)을 함

유한 제품은 “종합비타민 B 군의 보충이 필요한 XX 대상”으로 표기한다.

**【부적합자】** “보건식품 원료 목록” 중의 대상 분류에 부합해야 한다. 섭취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특정대상, 기존 과학근거로 해당 제품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없는 3 세 이하의 영유아·임부·수유모 등 특정대상 및 현행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하는 특정대상을 포함한다. 또한 아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제품 제형을 정제·캡슐 등으로 한 경우, 식용방법에 따른 식용안전 위험자를 배제해야 한다.

(2) 제품이 사용한 원료·부재료에 대응하는 적용범위에 따라 부적합자를 정한다. 예를 들어 사용한 화합물의 사용범위가 “4 세 이상(4 세 포함)”인 경우, 부적합자는 “3 세 이하(3 세 포함)”를 포함한다.

(3) 영양소 보충제의 부적합자는 1 세 이하(1 세 포함)를 포함해야 한다. 부적합자가 2 개 또는 2 개 이상 이어진 연령대에 해당한 경우에는 연령대를 합쳐 표기한다.

**【건강기능】** “보건식품 원료 목록”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을 표기한다.

영양소 보충제는 보충하는 모든 비타민과 광물질을 나열하고, “XX, XX 보충”이라 표기한다.

3 종 및 그 이상의 비타민을 함유한 제품은 “종합비타민 보충”으로 표기한다. 3 종 및 그 이상의 광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종합광물질 보충”으로 표기한다. 비타민과 광물질의

종류가 모두 3개(3개 포함)이상인 경우에는 “종합비타민·광물질 보충”으로 표기하고, “그 중의 한가지 또는 몇가지 원료명칭+ 종합비타민·광물질의 보충”의 형식으로 표기해서는 아니된다.

3종 및 그 이상의 비타민 B 군을 함유한 제품은 “종합비타민 B 군 보충”으로 표기한다.

【섭취량 및 섭취방법】제품 성분의 배합 및 사용량의 과학적 근거·안전성·건강기능 평가자료 등과 일치해야 한다. 섭취량 및 섭취방법의 설명은 규범적이고 자세하며 섭취량(매일 섭취 횟수와 매회 섭취량 표기), 섭취방법의 순서로 표기해야 한다. 섭취대상에 따라 섭취량이 다를 경우, 섭취량은 섭취대상 별로 각기 표기한다.

고체형태 영양소 보충제의 매일 섭취량은 20g 을 초과할 수 없고, 액체형태 영양소 보충제의 매일 섭취량은 30g 을 초과할 수 없다.

【규격】최소 제제단위(최소 섭취단위)의 중량 또는 부피(포장재료 제외)이다. 예를 들어, 캡슐제는 내용물의 중량을 말하고, 당의정은 백당을 입히기 전의 정제 중량을 말하고, 필름코팅정은 코팅 후 중량을 검사한다. 제품의 규격은 제품의 섭취방법·섭취량에 적합해야 한다. 정제는 Xg/정, 캡슐제는 Xg/캡슐, 액체는 Xml/병(또는 포), 과립은 Xg/포로 표기한다.

비안(备案) 신청은 1 회에 일종의 제품 규격을 비안(备案)할 수 있고, 여러 규격의 비안(备案)을 원할 경우, 비안(备案) 변경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변경 요구에 부합하면 비안

(备案) 증빙의 비고란에 기타 규격을 나열한다. 동일한 제품은 규격별로 여러 비안(备案) 증빙을 취득할 수 없다.

원 등록인이 제품 비안(备案)할 경우, 기존 허가증 또는 기신청 등록한 제품에 여러 규격과 섭취량·섭취방법이 있을 경우, 비안(备案) 시 한 규격을 기재하고, 기타 규격과 섭취량·섭취방법은 비안(备案) 증빙의 비고란에 나열한다.

【보관방법】 제품의 특성·안정성 실험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확정한다. 보관방법이 냉장보관 등 특수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관조건을 표기해야 한다.

【유통기한】 안정성 실험의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확정하고, “XX 월”로 표기하고, 월 단위를 채울 수 없을 경우에는 “XX 일”로 표기한다. 안정성 가속실험을 한 제품의 유통기한은 24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주의사항】 “본 제품은 의약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섭취대상 외에 본 제품의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를 표기해야 한다. 영양소 보충제 제품은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지 말고, 동일 종류 영양소와 동시 섭취하지 마십시오.”를 추가 표기해야 한다. 필요 시 연구개발 상황, 과학적 인식 및 제품 특성에 따라 상응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재료에 아스파탐이 함유해 있어 페닐케톤뇨증 환자는 섭취금지, 발포정은 씹거나 입에서 녹이거나 삼켜서는 않됨 등이다.

#### 5.8 제품의 기술요구 자료

비안(备案)인은 제품의 기술요구 내용이 완전하고, 검측보

고서의 검측결과와 일치하고, 현행 법규·기술규범·식품안전 국가표준·“보건식품 원료 목록”의 규정에 부합함을 보증한다.

비안(备案)인이 보건식품 비안(备案)관리 정보시스템에 비안(备案) 정보를 기재하면 제품 기술요구는 자동 생성된다.

【제품 명칭】비안(备案)인이 보건식품 비안(备案)관리 정보시스템에 비안(备案) 정보 기재 후 자동 생성한다.

【원료】5.3 제품 성분 자료에 의거 모든 원료 및 사용량을 나열한다.

【부재료】5.3 제품 성분 자료에 의거 모든 부재료 및 사용량을 나열한다.

【제조공정】실제 공정 작업 절차에 따라 주요 공정·중요 공정 순서로 수치를 선택하고, 동일한 내용의 주요 공정은 실제 제조메뉴얼에 따라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제품에 직접 닿는 포장재료의 종류·명칭·표준】5.6 항의 자료요구와 일치하다.

【외관】제품의 외관(색깔·상태 등)과 내용물의 색깔·맛·냄새·상태 등을 설명한다. 제품에 직접 닿지 않는 포장재료의 외관·캡슐제의 캡슐의 색깔 등을 설명한다.

【검증】제품 성분 및 관련 연구결과 등에 따라 제품의 검증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확히 설명한다. 검증 항목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공한다.

【물리화학적 특성】물리화학적 특성의 명칭·수치와 검측방법을 표기한다. 검측방법을 국가표준·지방표준 또는 규범

성문건을 적용한 경우, 표준번호 또는 규범성문건의 제목과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비안(备案)인이 검측방법을 국가표준·지방표준 또는 규범성문건을 토대로 수정한 경우, 표준번호 또는 규범성문건의 제목과 번호를 명시하고, 수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비안(备案)인이 검측방법을 연구하여 정한 경우, 검측방법 관련 전체 내용을 설명하고, 본 제품에 대한 검측방법의 적용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미생물 지표】 미생물지표의 명칭·수치와 검측방법을 표기한다.

【기능 성분 또는 주요 성분 지표】 기능 성분 또는 주요 성분의 명칭·지표범위와 검측방법을 표기한다.

영양소 보충제 제품의 기능 성분은 섭취 최소단위(예를 들면 1 정, 1 캡슐, 1 포, 1 병)의 기능 성분 수치이고, 보충하는 모든 영양소를 포함한다. 비타민의 함량범위는 표기 수치의 80%—180%이고, 광물질의 함량범위는 표기 수치의 75%—125%이다. 기능 성분의 지표범위는 “보건식품 원료 목록”에 정한 제품 섭취대상에 상응한 매일 섭취량에 부합해야 한다.

기능 성분 또는 주요 성분의 검측방법을 국가표준·지방표준 또는 규범성문건을 적용한 경우, 표준번호 또는 규범성문건의 제목과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비안(备案)인이 검측방법을 국가표준·지방표준 또는 규범성문건을 토대로 수정한 경우, 표준번호 또는 규범성문건의 제목과 번호를 명시하고, 수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비안(备案)인

이 검측방법을 연구하여 정한 경우, 검측방법 관련 전체 내용을 설명하고, 본 제품에 대한 검측방법의 적용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용량 또는 중량 오차 지표(함량 및 오차 허용지표)】 문자형식으로 용량 또는 중량의 오차 지표(함량 및 오차 허용지표)를 설명한다.

【원료·부재료의 품질요구】 원료·부재료의 구체적인 품질 표준을 항목별로 나열한다.

“보건식품 원료 목록”·보건식품 비안(备案) 제품 사용가능한 부재료 관련 요구에 부합할 경우에는 표준번호를 명시한다. 사전 처리한 원료는 원료의 출처와 집행표준·주요 생산 공정 및 중요 공정의 수치 등을 명시해야 한다.

5.9 합법적 자격을 갖춘 검측기구에서 발부한 제품 기술 요구에 부합하는 전 항목 검측보고서

5.9.1 검측기구는 비안(备案)인이 작성한 제품 기술요구에 정한 항목·방법 등에 따라 검측하고, 3 차 제품의 기술요구 전 항목 검측보고서를 발부한다.

검측보고서는 검측결과가 현행 법규·규범성문건·강제성 국가표준과 제품 기술요구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결론이 있어야 한다.

보건식품 비안(备案) 검측신청표·비안(备案) 검측 접수통지서와 검측보고서 중 제품의 명칭·검측 지표 등 내용은 일치해야 한다. 검측기구는 검측보고서를 발부한 후 변경할 수 없다.

합법적 자격을 갖춘 검측기구에서 인증을 하지 않은 외관·기능 성분 또는 주요 성분의 지표 관련하여 검측기구는 문자로 그 검측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5.9.2 해당 검측보고서는 5.5 항의 검측보고서와 동일한 검측기구에서 발부하고, 3 차 제품에 대한 검측보고서여야 한다.

5.9.3 원 등록인이 제품 성분 또는 제품 기술요구의 조정으로 비안(备案) 신청을 한 경우, 5.9.1 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품 성분과 제품 기술요구를 조정하지 않은 경우, 기존 비안(备案) 시 제출한 검측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

#### 5.10 제품 명칭 관련 검색자료

비안(备案)인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및 출력하고, 제품 명칭(상표명·통용명과 속성명 포함)이 기 등록 또는 비안(备案)한 보건식품의 명칭과 중복되지 않은 검색자료를 제공한다.

#### 5.11 기타 제품의 안정성과 건강기능을 나타내는 자료

##### 6 수입 보건식품의 비안(备案) 자료 항목 및 요구

국산 제품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외에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6.1 비안(备案)인 주체등기 증명자료

제품 제조국(지역)의 정부 주관부서 또는 법률서비스기구에서 발부한 비안(备案)인이 시중 보건식품의 해외 제조업체임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자료로, 발부기구의 명칭·제조업체

의 명칭과 주소·제품 명칭과 발부일자 등을 표기해야 한다.

6.2 비안(备案) 제품이 시중에서 1년 이상 판매한 자료  
제품 제조국(지역)의 정부 주관부서 또는 법률서비스기구  
에서 발부한 보건식품 유사 제품이 시중에서 1년 이상 판  
매한 증명자료 또는 제품 해외 판매 및 식용 상황 관련 안  
전성보고서.

시중 1년 이상 판매한 증명자료는 제품 제조국(지역)에서  
보건식품 유사 제품으로 1년 이상 판매한 증명자료로, 자료  
발부기구의 명칭·비안(备案)인의 명칭과 주소·제조업체의 명  
칭과 주소·제품 명칭과 발부일자를 표기하고, 해당 제품이  
제품 제조국(지역)의 법률과 관련 기술법규·표준에 부합하고,  
해당 국가(지역)에서 제조·판매가 가능함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제품의 기능·섭취대상 등이 비안(备案)을 신청하는 제  
품과 일치하고 식용안전을 보증하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품 수출국(지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출국(지역) 주  
관부서의 판매허가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6.3 제품 제조국(지역) 또는 국제조직의 보건식품 비안  
(备案)과 관련한 기술법규 또는 표준 원문. 해외 제조업체가  
중국에 수출하는 보건식품이 중국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  
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함을 보증하는 설명  
서와 제조 품질관리시스템이 유효하게 운영함을 보증하는  
자체 진단 보고서.

신청자료로 제품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 자료를 제출

해야 할 경우, 제품 제조국(지역)의 정부 주관부서 또는 정부 주관부서가 지정한 법적책임을 가진 관련 부서에서 발부한 GMP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자료 발부기구의 명칭·제품 명칭·제조업체 명칭과 자료 발부일자를 표기해야 한다.

6.4 비안(备案)인은 검측용 샘플의 출처가 명확하고 근원확인이 가능하며, 수입 비안(备案) 제품이 제품 제조국(지역)의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임을 보증한다.

6.5 제품 제조국(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포장·라벨설 명서 견본

제품 제조국(지역)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일치한 라벨설명서의 견본 및 사진, 중국 공증기구의 공증을 거치고 원문의 내용과 일치한 중문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6.6 해외 비안(备案)인의 중국 대표기구가 비안(备案)업무를 이행할 경우, “외국기업 상주 중국 대표기구 등기증” 스캔본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 비안(备案)인이 중국 대리기구에 비안(备案) 사항을 위임한 경우, 공증을 거친 위임장 원본 및 수입한 대리기구의 영업집조 스캔본을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은 비안(备案)인·수입회사 명칭·제품 명칭·위임사항 및 위임장 발부일자를 표기해야 한다.

6.7 비안(备案) 자료는 중문을 사용하고, 외국어 자료를 첨부한다. 외국어의 증명자료·외국어 라벨설명서 등의 중문 번역본은 원문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중국 공증기구의 공증이 필요하다.

6.8 해외기구에서 발부한 증명자료·위임장(협의서) 등은 원본을 제출하고, 제품 제조국(지역)의 언어를 사용하고, 비안(备案)인이 날인 또는 법정대표인(또는 위임한 자) 서명 후 소재국(지역) 공증기구의 공증과 소재국 주재 중국 영사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증명자료·위임장(협의서) 등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경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6.9 제조 및 판매 증명자료·품질관리시스템 또는 GMP 증명자료·위탁가공협의서 등 증명문건 제출 시 여러 제품을 나열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을 모두 비안(备案)할 경우, 한 제품은 원본을 사용하고 기타 제품은 사본을 사용하며 원본을 사용한 비안(备案)제품의 명칭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해당 제품을 동시에 비안(备案)하지 않을 경우, 한 제품은 원본을 사용하고, 기타 제품은 공증을 거친 사본을 사용하며 원본을 사용한 비안(备案)제품의 명칭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 7 비안(备案)의 변경

기 비안(备案)한 보건식품의 비안(备案) 증빙 및 첨부문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비안(备案)인은 비안(备案) 신청절차에 따라 원 비안(备案)기관에 비안(备案) 신청 관련 자료와 증명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비안(备案) 자료가 요구에 부합할 경우에는 변경을 허가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변경상황을 변경정보에 등재하고, 조사 대비 비안(备案)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비안(备案)인의 담당자·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즉시 비안(备案) 접수기구에 비안(备案)인의 도장을 날인한 변경신

청서를 제출하고, 접수기구는 즉시 관련 정보를 정정한다.

비안(备案)을 완료한 보건식품의 제품 명칭(상표명)이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이유로 감독관리부서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비안(备案)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8 부칙

본 지침은 시행판이고, “보건식품 원료 목록” 및 비안(备案) 업무절차가 조정된 경우에는 즉시 수정한다.

- 첨부 : 1. 국산 보건식품 비안(备案)등기표  
2. 수입 보건식품 비안(备案)등기표  
3. 국산 보건식품 비안(备案)증빙  
4. 수입 보건식품 비안(备案)증빙  
5. 보건식품 제품설명서(양식)  
6. 보건식품 제품 기술요구(양식)  
7. 보건식품 비안(备案) 검측신청표  
8. 보건식품 비안(备案) 검측 접수통지서  
9. 기능 성분 또는 주요 성분의 검측/안정성 검

측보고서

10. 위생학 검측보고서

별첨 1

국산 보건식품 비안(备案)  
등기표

제품 명칭 :

비안(备案)인 :

작성일자 :    년    월    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제작

## 작성방법

1. 본 표의 등기내용 및 첨부자료는 보건식품 비안(备案)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해야 한다.

2. 본 표에 등기된 내용은 규범·완정·명확하게 기입하고 수정 불가한다.

3. 표에 있는 비안(备案)인의 명칭·주소는 비안(备案)인 주체등기 증명자료에 기재된 해당 내용과 완전 일치해야 한다.

4. 본 표를 기입하기 전에 관련 법규를 침착히 읽으십시오. 신청 요구대로 기재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비안(备案)할 수 없다.

5. 표에 있는 연락인·연락처 등은 보건식품 비안(备案)부서가 비안(备案) 작업을 진행하는 주요한 연락방식이다. 표에 기입된 연락인·연락처 등 변경 시에 비안(备案)인은 제품 비안(备案) 관련 피드백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비안(备案)부서에 관련 정보를 즉시 갱신해야 한다.

6. 본 표는 국산 보건식품 비안(备案)을 신청하는 제조업체 및 원 등록인에게 적용한다.

제품 명칭			
비안(备案)인			
비안(备案)인 주소			
연락인		우편	
연락처		팩스	
비안(备案) 보 건기능	<input type="checkbox"/> 영양소 보충제 <input type="checkbox"/> 기능 제품 (기능 _____)		

**제출 자료 진실성에 책임지는 비안(备案)인의 법률책임승낙서**

**본 제품의 비안(备案)인은 정중히 약속한다.** 본 비안(备案)인은 상응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보건식품 비안(备案) 관리 관련 법률·법규·규장 및 기술요구를 숙지하고,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진행하는 비안(备案) 업무에 자원적으로 협조 의무를 이행한다. 본 등기표에 기재한 내용 및 첨부자료는 진실·완정·합법·근원확인이 가능하고, 온라인 상 제출한 자료는 원본과 일치하다. 첨부자료 중의 데이터는 본 제품에 대한 검측을 통해 취득한 진실한 데이터이다. 본 비안(备案)인은 비안(备案)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자료 및 비안(备案)인이 작성한 제품에 직접 닿는 포장재료의 종류·명칭·표준·검증·물리화학적 특성·검측방법 등 비안(备案)자료의 모든 내용이 보건식품 비안(备案) 감독관리 관련 법률·법규 및 기술 규범의 요구에 부합함을 확인한다. 본 비안(备案)인은 합법적 자격을 갖춘 검측기구의 검사보고서 중, 검측기구에서 인증을 하지 않은 외관지표·기능 성분 또는 주요 성분의 검측 방법 적용성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본 비안(备案)인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사회대중에게 모든 비안(备案)자료, 비안(备案)증빙 및 첨부자료 등 비안(备案)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

**본 비안(备案)인은 인지한다.** 비안(备案)인은 보건식품의 비안(备案)에 개발주체의 책임을 진다. 보건식품 비안(备案) 시스템은 비안(备案)인과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보건식품 비안(备案)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비안(备案)한 보건식품의 안전성·기능·품질관리 및 준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본 등기표에 기입된 연락인·연락처 등 변경 시, 본 비안(备案)인은 비안(备案)기구에 즉시 변경 신청을 한다.

이상 진실이 아닌 점이 있으면 본 비안(备案)인은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_\_\_\_\_  
비안(备案)인 (날인)  
년 월 일

\_\_\_\_\_  
법정대표인 (서명)  
년 월 일

본 페이지의 첨부자료는 비안(備案) 접수부서가 기입한다. (다음의 목록대로 일일이 체크하고 □에 “√”를 표시한다.)

**자료 목록**

- 1. 국산 보건식품 비안(備案) 등기표
- 2. 비안(備案)인 주체등기 증명자료 사본
- 3. 제품 성분 자료: 제품 성분표  
(성분 변경 시, 원 등록인은 조정 후의 성분 및 성분 변경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4. 제품 제조공정 자료(제조공정도 및 설명 포함)
- 5. 안전성 및 보건기능 평가 자료
- 5.1 중간 실험 이상 규모의 공정 제조를 거친 3차 제품에 대한 기능 성분 또는 주요 성분·위생학·안정성 검증보고서 (제품 성분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원 등록인은 본항 제출 불요)
- 5.2 원료·부재료를 합리적으로 사용한 설명 및 라벨설명서·제품 기술요구의 작성이 관련 법규에 부합한다는 설명
- 6. 보건식품에 직접 닿는 포장재료의 종류·명칭·관련 표준
- 7. 제품 라벨 설명서 견본
- 8. 제품의 기술요구 자료
- 9. 합법적 자격을 갖춘 검측기구에서 발부한 제품 기술요구에 부합하는 전 항목 검사보고서
- 9.1 식품 검측기구의 자격증명 자료
- 9.2 제품 기술 요구에 부합하는 3차 제품에 대한 전 항목 검사보고서
- 10. 제품 명칭 관련 검색자료
- 11. 기타 제품의 안전성과 건강기능을 나타내는 자료

**원 등록인은 아래 자료 추가 제출**

- 12. 보건식품 비준증서를 취득한 경우, 유효한 보건식품 증서 및 별첨자료
- 13. 등록신청을 비안(備案)으로 전환할 경우, 등록에서 비안(備案)으로 전환하는 증빙

기타 설명(첨부 가능):

자료접수자 서명: \_\_\_\_\_ ; 시간: \_\_\_\_\_년 \_\_\_\_\_월 \_\_\_\_\_일

별첨 2

수입 보건식품 비안(备案)  
등기표

제품 명칭 :

비안(备案)인 :

작성일자 :    년    월    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제작

## 작성방법

1. 본 표의 등기내용 및 첨부자료는 보건식품 비안(备案)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해야 한다.

2. 본 표에 등기된 내용은 규범·완정·명확하게 기입하고 수정 불가한다.

3. 표에 있는 비안(备案)인의 명칭·주소는 비안(备案)인 주체등기 증명자료에 기재된 해당 내용과 완전 일치해야 한다.

4. 본 표를 기입하기 전에 관련 법규를 침착히 읽으십시오. 신청 요구대로 기재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비안(备案)할 수 없다.

5. 표에 있는 연락인·연락처 등은 보건식품 비안(备案)부서가 비안(备案) 작업을 진행하는 주요한 연락방식이다. 표에 기입된 연락인·연락처 등 변경 시에 비안(备案)인은 제품 비안(备案) 관련 피드백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비안(备案)부서에 관련 정보를 즉시 갱신해야 한다.

6. 해외 제조업체(비안(备案)인)란 그 소재국(지역)의 시장진입 요구에 부합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한다. 제조업체는 제품의 실제 생산자이다. 비안(备案)인이 비안(备案)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비안(备案)등기표 및 비안(备案) 증빙에 기입된 제조업체는 비안(备案)인과 일치하고, 비안(备案)인이 해외 기타 업체에 위탁생산한 경우에 제조업체는 비안(备案)인의 위탁을 받고 해당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제조국의 제조 주소지를 추가할 경우, 수입 보건식품 비안(备案) 증빙에 추가할 수 있다.

제품 명칭	중문			
	영문			
비안(备案)인	중문			
	영문			
비안(备案)인 주소	중문		영문	
제품 제조국(지역)				
제조업체	중문			
	영문			
국내 대리기구				
국내 대리기구 주소				
연락인			연락처	
비안(备案) 건강기능	<input type="checkbox"/> 영양소 보충제 <input type="checkbox"/> 기능 제품 (기능_____ )			

**제출 자료 진실성에 책임지는 비안(备案)인의 법률책임승낙서**

**본 제품의 비안(备案)인은 정중히 약속한다.** 본 비안(备案)인은 상응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보건식품 비안(备案) 관리 관련 법률·법규·규장 및 기술요구를 숙지하고,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진행하는 비안(备案) 업무에 자원적으로 협조 의무를 이행한다. 본 등기표에 기재한 내용 및 첨부자료는 진실·완정·합법·근원확인이 가능하고, 온라인 상 제출한 자료는 원본과 일치하다. 첨부자료 중의 데이터는 본 제품에 대한 검측을 통해 취득한 진실한 데이터이다. 본 비안(备案)인은 비안(备案)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자료 및 비안(备案)인이 작성한 제품에 직접 닿는 포장재료의 종류·명칭·표준·검증·물리화학적 특성·검측방법 등 비안(备案)자료의 모든 내용이 보건식품 비안(备案) 감독관리 관련 법률·법규 및 기술 규범의 요구에 부합함을 확인한다. 본 비안(备案)인은 합법적 자격을 갖춘 검측기구의 검사보고서 중, 검측기구에서 인증을 하지 않은 외관지표·기능 성분 또는 주요 성분의 검측방법 적용성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본 비안(备案)인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사회대중에게 모든 비안(备案)자료, 비안(备案)증빙 및 첨부자료 등 비안(备案)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

**본 비안(备案)인은 인지한다.** 비안(备案)인은 보건식품의 비안(备案)에 개발주체의 책임을 진다. 보건식품 비안(备案) 시스템은 비안(备案)인과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보건식품 비안(备案)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비안(备案)한 보건식품의 안전성·기능·품질관리 및 준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본 등기표에 기입된 연락인·연락처 등 변경 시, 본 비안(备案)인은 비안(备案)기구에 즉시 변경 신청을 한다.

이상 진실이 아닌 점이 있으면 본 비안(备案)인은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비안(备案)인 (날인)  
년 월 일

법정대표인 (서명)  
년 월 일

국내대리기구 (날인)  
년 월 일

법정대표인 (서명)  
년 월 일

본 페이지의 첨부자료는 비안(备案) 접수부서가 기입한다. (다음의 목록대로 일일이 체크하고 □에 “√”를 표시한다.)
<b>자료 목록</b>
<input type="checkbox"/> 1. 수입 보건식품 비안(备案) 등기표 및 제출 자료 진실성에 책임지는 비안(备案)인의 법률책임승낙서
<input type="checkbox"/> 2. 비안(备案)인 주체등기 증명자료 사본
<input type="checkbox"/> 3. 제품 성분 자료: 제품 성분표 (성분 변경 시, 원 등록인은 조정 후의 성분 및 성분 변경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4. 제품 제조공정 자료(제조공정도 및 설명 포함)
<input type="checkbox"/> 5. 안전성 및 보건기능 평가 자료
<input type="checkbox"/> 5.1 중간 실험 이상 규모의 공정 제조를 거친 3 차 제품에 대한 기능 성분 또는 주요 성분·위생학·안정성 검측보고서 (제품 성분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원 등록인은 본 항 제출 불요)
<input type="checkbox"/> 5.2 원료·부재료를 합리적으로 사용한 설명 및 라벨설명서·제품 기술요구의 작성이 관련 법규에 부합한다는 설명
<input type="checkbox"/> 6. 보건식품에 직접 닿는 포장재료의 종류·명칭·관련 표준
<input type="checkbox"/> 7. 제품 라벨 설명서 견본
<input type="checkbox"/> 8. 제품의 기술요구 자료
<input type="checkbox"/> 9. 합법적 자격을 갖춘 검측기구에서 발부한 제품 기술요구에 부합하는 전 항목 검사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9.1 식품 검측기구의 자격증명 자료
<input type="checkbox"/> 9.2 제품 기술 요구에 부합하는 3 차 제품에 대한 전 항목 검사보고서
<input type="checkbox"/> 10. 제품 명칭 관련 검색자료
<input type="checkbox"/> 11. 기타 제품의 안전성과 건강기능을 나타내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12. 제품 제조국(지역) 정부 주관부서 또는 법률서비스기구 발급한 비안(备案)인이 시중보건식품의 해외 제조업체임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자료
<input type="checkbox"/> 13. 제품 제조국(지역)의 정부 주관부서 또는 법률서비스기구에서 발부한 보건식품 유사 제품이 시중에서 1년 이상 판매한 증명자료 또는 제품 해외 판매 및 식용 상황 관련 안전성보고서
<input type="checkbox"/> 14. 제품 제조국(지역) 또는 국제조직의 보건식품과 관련한 기술 법규 또는 표준 원문
<input type="checkbox"/> 15. 제품 제조국(지역)에서 판매되는 포장·라벨·설명서 견본, 중문번역본 및 공증서
<input type="checkbox"/> 16. 해외 비안(备案)인의 중국 대표기구가 비안(备案)업무를 이행할 경우, “외국기업 상주 중국 대표기구 등기증” 및 그 사본 제출. 해외 비안(备案)인이 국내 대리기구에 비안(备案)을 위임한 경우, 공증을 거친 위임장 원본 및 수입한 대리기구의 영업집조 사

본 제출
<b>원 등록인은 아래 자료 추가 제출</b>
<input type="checkbox"/> 17. 보건식품 비준증서를 취득한 경우, 유효한 보건식품 증서 및 별첨자료(원본)
<input type="checkbox"/> 18. 등록신청을 비안(备案)으로 전환할 경우, 등록에서 비안(备案)으로 전환하는 증빙 원본
기타 설명이 필요한 문제 (필요하면 첨부페이지를 사용하면 된다):
자료접수자 날인: _____ ; 시간: _____년____월____일